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우대 근거 신설〉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44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우대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8.
3. 회부연월일 : 2024. 8.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022년 기준 약 4만 3천명으로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만 8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지원 외에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우대 근거 신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제17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보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 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다.

현행법령¹⁾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1) 「소상공인기본법」

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자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음(2024년 기준).

[표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금액(2024년)

(단위: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 비율	80%		60%		50%		
지원 금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4.1.11.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약 5만 2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9%이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약 2만 6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표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월
전체 자영업자(A)	5,531	5,513	5,532	5,567	5,682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B) (비율, B/A)	30 (0.6)	37 (0.7)	43 (0.8)	48 (0.9)	52 (0.9)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C)* (비율, C/B)	22 (72.0)	27 (73.6)	29 (67.1)	46 (96.5)	50 (96.8)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D) (비율, D/C)	10.1 (46.3)	14.7 (54.2)	18.0 (63.0)	24.9 (54.2)	26.0 (51.8)

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소상공인: (~2022년) 1인 소상공인, (2023년~) 모든 소상공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³⁾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바,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의 형태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유지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 소상공인·자영업자라는 지적이 있음.⁴⁾⁵⁾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세한 형태로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난 및 수익성 악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보다 경기순환 및 계절변화에 의한 소득변동이 크며, 이로 인한 부채 발생, 폐업 등의 경제적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4) 김민섭·김지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 2022-07, 2022.12.31., pp.5-6

5) 동 보고서에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점, 직업훈련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점, 경기 불황기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늘리고 호황기에는 고용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유효수요 안정화를 통한 경기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용보험의 긍정적 효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⁶⁾

따라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금리를 감면함으로써 우대하고 있음.

[표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2024년)

유형	구분
정책 우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u>자영업자 고용보험</u> ,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주: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 지원(2024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2024.10.25.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험료 지원 외에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에 동의하는 입장임.

6) 박충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3.12.18., pp.1-5

문 의 처
02)6788-5465